



보도 참고 자료



보도 일시	2022. 4. 7.(목) 10:00	배포 일시	2022. 4. 7.(목) 08:30
담당 부서	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	책임자	과 장 민혜영 (044-200-4932)
		담당자	사무관 김민서 (044-200-4934)

「가맹·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 운영지침」 제정안 행정예고

- 공정위, 소상공인 분쟁조정 활성화 기반 마련 -

-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조성욱, 이하 공정위)는 「가맹·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 운영지침」(이하 운영지침)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4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.
- 공정위는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(원장 김형배, 이하 조정원)과 서울·경기·인천·부산 등 지자체가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.
 - 제정안은 ▲중복신청시 처리 방법, ▲신청의 보완 절차, ▲다수인 공동 신청시 대표자의 권한, ▲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방법 등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였으며,
 - 조정의 각 단계에서 분쟁당사자와 공정위, 시·도에 대해 통지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하여 당사자와 관계기관이 조정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·관계기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·시행할 계획이다.

1

추진 배경

-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,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원 및 서울·경기·인천·부산 등 지자체와 함께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

- **조정원**은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 가맹본부와 가맹점(2008년), 공급업자와 대리점(2016년)이 조정안을 도출하여 **분쟁을 해소**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,
- **서울·경기·인천(2019.2.11.)**, **부산(2020.2.10.)** 등 4개 지자체 역시 현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가까운 곳에서 **편리하게 분쟁조정**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- **조정원과 4개 지자체가 각각 분쟁조정협의회(이하 협의회)를 구성하여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기관간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**되었다.
- 이에 따라 '21년 12월 **가맹사업법(제16조제3항)** 및 **대리점법(제13조제3항)**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분쟁조정 업무의 통일적인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「**가맹·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**」 제정안을 마련하였다.

2 **제정안 주요 내용**

가. 업무수행 절차 구체화

- (**중복 신청**) 서로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내용의 조정이 신청될 경우, 가맹·대리점이 **담당 협의회를 선택하도록 안내**하여 가맹·대리점의 **선택권이 보장**될 수 있도록 하였다. (안 제4조)
- 다만, 안내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하여 통지하지 않는 경우 **가장 먼저 신청 받은 협의회가 조정**을 담당한다.
- (**신청의 보완**) 분쟁조정 신청서의 내용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**분명하지 않은 경우**에도 신청인이 **2회 이상 보완 기회**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. (안 제5조)

- 다만, 신청인이 2회의 보완 요구에 **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** 협의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**조정**을 종료할 수 있다.
- **(대표자의 권한 등)**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고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, 대표자가 조정신청의 취하, 조정안의 수락·거부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**다른 신청인의 서면 동의를** 받을 것을 규정하여 개별 신청인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였다. (안 제6조)
- 또한, 대표자가 **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** 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신청인들에게 **대표자의 변경을 권고**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자로 인해 분쟁조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다.
- **(조사 방법)** 협의회는 분쟁당사자·이해관계인·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, 사업장 방문,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으로 구체화하여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 확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.(안 제8조)

나. 조정 현황 통지 절차 구체화

-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시 협의회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공정위, 시·도에 통지할 것을 명확히 하고, 통지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.
- 그간 협의회는 ①**조정 각하**·②**조정조서 작성**·③**조정 절차 종료시** 공정위 및 시·도에 ▲분쟁당사자의 현황, ▲가맹·대리점거래의 개요, ▲분쟁의 경위, ▲조정결과·각하 또는 종료 사유 등을 **보고**해왔다. (안 제7조, 제9조, 제10조)
- 제정안에서는 법 개정(6.8. 시행 예정) 내용을 반영하여 그동안 당사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하였던 **조정 접수 사항**을 공정위, 시·도에도 통지하도록 하였다. (안 제3조)
- 아울러, 통지할 내용으로 ▲분쟁당사자의 성명, ▲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, ▲신청일, ▲사건번호를 명시하고, 피신청인 통지시에는 **조정 신청서 사본**을 첨부하도록 하였다.

3

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- 운영지침이 제정되면 협의회의 조정 절차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 본부와 가맹점, 공급업자와 대리점 양 당사자는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, 가맹·대리점은 자료 보완, 협의회 선택 등 분쟁조정 절차에서 기회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.
 - 또한, 분쟁조정 신청시부터 공정위가 그 현황을 파악하여 분쟁발생의 추이·내용 등을 법 집행 및 정책 수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공정위는 4월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·시행할 예정이며,
 - 향후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관적 기준이 필요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.

※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

▶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(<http://www.ftc.go.kr> → 정책/제도 → 입법/행정예고)

▶ 심사지침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4월 27일까지 ①제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②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(찬성·반대·수정 의견과 그 이유)을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우편: (30107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, 4층(어진동, 단국빌딩)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

* 팩스: 044-868-3821

[붙임] 심사지침 제정안(행정예고안) 전문